

대표이사 선임 기준

※ '기업지배구조보고서' 상의 '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기준'에 해당

□ 기본 방향

- 경영능력 및 CEO로서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, 동시에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함

□ 대표이사 선임 단계

- 역량있는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 운영
 - ① 대표이사 후보자군 선정 → ② 육성/관리 → ③ 최종후보자 선정 → ④ 최종선임
- 대표이사 선임 기준은 인사(지원)부서 및 사내 유관조직이 상호 협업하여 수립 · 운영함

□ 단계별 세부기준

① 대표이사 후보자군 선정

- 대표이사의 유고 등 돌발적 상황에서도 경영상의 공백없이 언제든지 후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 후보군 운영
- 후보자는 재직 임원 및 임원직무 수행자 등 직원 중에서 선정하되, 대표이사에 적합한 업무경험, 전문성, 리더십 등을 갖춰야하며, 임원선임규정('20.01, 이사회결의) 기준에 부합해야 함

② 후보자군 육성 · 관리

- 회사는 후보자군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/수시 교육을 실시
- 교육 내용은 리더십, 문제해결력 등의 공통역량 교육과 사업/직무 영역에 따른 전문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두루 갖추도록 설계함
- 직무전환, 계열사간 이동 등을 통해 다양한 업무경험 및 전문성 강화의 기회 부여 가능

③ 최종후보자 선정

- 대표이사 변경이 필요한 경우, 회사는 최소 6개월 전부터 면밀한 검증 및 심의를 진행하여 대표이사 후보자군 중에서 최종후보자를 선정함
- 단, 영업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사내 후보자군이 최적의 대표이사 후보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외부인사를 최종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음

④ 최종 선임

- 최종후보자는 상법과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절차를 최종 마무리

□ 비상상황 발생시 선임 기준

- 대표이사의 비상상황 발생으로 더 이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,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직무대행 가능
- 대표이사 승계를 위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되, 후보자가 이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로, 이사가 아닌 경우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함

이 상.